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세청 소속기관에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150명(6급 108명, 7급 42명)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325명(4·5급 7명, 6급 140명, 7급 119명, 8급 59명)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및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6. 17. ~ 6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[별표 5]

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42조 관련)

1. 제42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<u>2028년</u> 2월 28일)	
총계	3
일반직 계	3
6급 이하	3
2. 제42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<u>2028년</u> 2월 28일)	
총계	2
일반직 계	2
6급 이하	2
3. 제42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7년 2월 26일)	
총계	17
일반직 계	17
6급 이하	17
4. 제42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7년 12월 31일)	
총계	21
일반직 계	21
6급 이하	21
5. 제42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7년 12월 31일)	
총계	475
일반직 계	475
4급 또는 5급 이하	475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한시정원) ① ~ ④ (생 락) <u><신 설></u>	제42조(한시정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</u> <u>리단 운영을 위하여 「행정기관</u> <u>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</u> <u>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</u> <u>월 31일까지 별표5에 따른 한시</u> <u>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</u> <u>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6